제 3 장　장기요양시설 운영

제 7 조 (이용대상)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칙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한다.

제 8 조 (이용정원)

① 방문요양의 정원은 40명으로 한다.<개정 2020. 5. 13>

② 주야간보호의 정원은 일일 이용정원 61명으로 한다.<개정 2023. 2. 23>

제 9 조 (모집방법)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안내지 제작, 홍보물 비치, 현수막 등을 통한 모집

②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등을 통한 모집

③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④ 신문 등 언론 홍보

⑤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이용자 모집

제 10 조 (이용계약)

① 이 규칙은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 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4. 기타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서류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 11 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및 등급외자에게 일상생활지원, 신체수발, 의료, 재활, 여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 12 조 (계약기간)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 13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칙에 의한다.

② 월 이용료는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9%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이용보증금은 없다.<개정 2021.2.18.>

③ 전항 규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주야간보호 식재료비(식사 및 간식 재료비)
2. 이·미용비(보호자요청)
3. 특별프로그램비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 서비스 이용시간별 서비스 단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따른다.<별표1> <개정 2021.12.20.>

제 14 조 (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변경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 조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의무

②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보의무

③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④ 이용비용 수납의무

⑤ 신변이상에 대한 적극 통보의무

제 16 조 (센터의 권리와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제공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②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③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④ 이용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의무

⑤ 신변이상에 대한 적극 통보의무

⑥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설물 관리 의무

제 17 조 (계약해지사유 및 해지)

① 계약의 해지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5. 이용자 혹은 보호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칙을 위반한 때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센터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센터에게 손해를 가한 때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단될 때

②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③ ①에 의한 계약해지사유 발생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나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①의 4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보호자)와 센터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중지를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 18 조 (서비스 내용)

① 주야간보호 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서비스
2. 기초건강체크, 물리치료 등의 건강관리서비스
3. 신체활동 및 운동, 일상생활동작훈련 등의 기능회복서비스
4. 작업활동, 인지활동, 치매프로그램 등의 심리기능서비스
5. 급·간식 서비스
6. 근거리산책, 야외활동 등의 사회적응서비스
7. 이용자 및 가족상담 등의 상담서비스
8. 시설환경 및 안전관리 사업
9. 연계 등 정보제공서비스

② 방문요양 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2.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3.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부축, 일상 업무 대행 등
4.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5. 인지활동지원서비스 : 인지자극 활동, 신체능력 잔존·유지 등

제 19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변화에 대해 알 권리·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센터 및 가정에서 이용자의 활동 및 생활에 대해 확인 할 권리·의무가 있다.

② 신원인수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방문요양의 신원인수 장소는 이용자 가정으로 한다.
2. 주야간보호의 신원인수 장소는 센터 및 송영인수 장소로 정한다.

③ 방문요양의 신원인수 시간은 계약된 방문요양 파견시간 내 이용자 수발을 원칙으로 한다.

④ 주야간보호의 신원인수 방법은 센터 직원과 보호자(가족 포함)가 대면하여 직접 인계인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원인수인이 없는 독거이용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20 조 (배상책임)

① 센터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의 부실로 인해 이용자가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센터는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21 조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센터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②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칙에 의한다.

제 22 조 (운영규칙의 개정방법 및 절차)

① 운영규칙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

2. 법인 및 센터의 운영규칙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3.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운영규칙은 ①의 변경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